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4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4. 12
다. 상정일자 : 2006. 4. 18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나. 제안사유

-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기념관 위치는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에 둠(안 제2조)
- 기념관은 화순군에서 직접 운영하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안 제4조제1항)
- 관람료 징수근거와 관람금지대상,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제8조)
- 소장품 대여 및 시설 대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항, 제14조)
-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본 제정조례안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

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붙임 :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지호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기념관의 위치는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작품 및 유물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전시실 운영

제4조(전시실운영) ①기념관은 화순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기념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위탁운영 및 비용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 설날(전·후 1일 포함), 추석날(전·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제7조(관람료) ①군수는 미술관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화순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념관에 입장 할 수 없다.

1. 정신이 박약하거나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전시품·기타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미술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② 관리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소장품 관리

제10조(소장품 관리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작품을 기념관 소장품으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기념관에 기증된 작품
 2. 기타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 ② 소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품 대여) ① 군수는 기념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장 대관 등

제14조(대관허가) 군수는 기념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 등을 대관 허가 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시간) ①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하고자 하는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5. 관람료의 징수여부

제17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증지를 2회이상 받은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관료)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실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관료 감면) 군수는 화순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21조(대관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
2.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19조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제22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기념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대관자는 제22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지호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2. 미술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2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자문한다.
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원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